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2.9.11 (화) 10:00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전문위원 송장섭

#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도경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2년 8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'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'→'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'으로, '향토기업'→'충북기업'으로 용어 개정(안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- 나.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항의 용어를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.